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1. 10.

지 식 경 제 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1. 개정이유

한·미 FTA 협상 결과 금융위원회가 우체국보험에 대한 규제 감독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상품특정적 광고의 심의요건 및 금융감독 관련 협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상품특정적 광고를 하는 경우 심의요건 규정(안 제4조제2항)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가 준수하는 것과 동일한 심의 요건을 준수

나. 금융감독 관련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 세부절차를 규정(안 제6조의2, 안 제36조제4항)

- 1) 보험종류에 대한 수정, 결산종료 시 금융위원회에 관련 서류 제출 및 협의 의무화
 - 금융위원회의 권고 또는 제시 의견에 조치를 취하고 미흡한 점의 본질을 공시에 포함
- 2) 계약보험금 한도액 인상 시 인상안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제출하고 협의를 의무화
 - 금융위원회는 인상안에 대하여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조치

다. 보험의 종류 및 수정 범위를 구체화(안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36조제1항,2항,3항)

- o 보험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수정범위에 기존 담보의 추가 또는 삭제, 보장금액의 증감, 기존 담보간 결합 등을 포함

라. 개정 조문의 시행일 규정(부칙)

- o 개정 시행규칙은 한·미 FTA 효력 발생일로 부터 시행 하되,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 개정규정은 협정 발효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식경제부령 제 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제35조의 보험종류에 대한 상품특정적 광고를 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준수하는 것과 동일한 요건에 따라 광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 ①금융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0조제4항 및 5항에 의거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고 미흡한 점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의견 또는 권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보험종류의 수정 시 기초서류

2. 결산이 끝났을 경우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의견 또는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부터 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별표1의 보험의 종류에 대하여 제6조의2 절차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의 범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기존담보의 추가 또는 삭제, 보장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
2. 기존담보간의 결합, 보장범위의 축소 또는 확대에 의한 담보의 추가
3. 기존담보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파생되는 담보의 추가
4. 보험금 지급사유를 제외한 약관 조항의 신설 또는 변경
5. 사업방법서의 사업범위 조정 및 산출방법서의 산출기초율 조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
6.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5조제4항을 삭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험상품별(제35조제1항제2호)를 “보험종류별(별표1”로, “4천만원(제35조제1항제3호)를 “4천만원(별표 1”로, “보험상품별”을 “보험종류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35조제1항제2호”를 각각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인상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협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경제부장관은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인상할 경우 사전에 인상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금융위원회는 제1호의 인상안의 내용을 공표하여 공중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금융위원회는 제1호의 인상안과 제2호에 의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호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 2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예금·보험의 증대 활동) (생략) <신설>	제4조(예금·보험의 증대 활동) ① (현행과 같음) ② <u>우정사업본부장은 제35조의 보험종류에 대한 상품특정적 광고를 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준수하는 것과 동일한 요건에 따라 광고를 시행하여야 한다.</u>
<신설>	제6조의2(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 ① <u>금융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0조제4항 및 5항에 의거 제출한 다음 각 호에 서류를 검토하고 미흡한 점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의견 또는 권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u> 1. <u>보험종류의 수정 시 기초서류</u> 2. <u>결산이 끝났을 경우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u> ② <u>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의견 또는 권고에 따라 필요한</u>

제35조(보험의 종류) ① 법 제28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u>다음 각 호와 같다.</u> 1. ~ 4. (생략) ② (생략) ③ <u>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의 상품별 명칭을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보험의 상품별 명칭을 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35조(보험의 종류) ① ----- ----- <u>별표 1과 ----.</u> 1. ~ 4.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u>지식경제부장관은 별표 1의 보험의 종류에 대하여 제6조의 2 절차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의 범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u> 1. <u>기존담보의 추가 또는 삭제, 보장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u> 2. <u>기존담보간의 결합, 보장범위의 축소 또는 확대에 의한 담보의 추가</u> 3. <u>기존담보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파생되는 담보의 추가</u> 4. <u>보험금 지급사유를 제외한 약관 조항의 신설 또는 변경</u> 5. <u>사업방법서의 사업범위 조정 및 산출방법서의 산출기초율 조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u> 6. <u>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경우</u> <u>조치를 하여야 한다.</u>
---	--

④ (생략)

제36조(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① 법 제28조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보험상품별 (제35조제1항제2호의 연금보험은 제외한다)로 피보험자(被保險者) 1인당 4천만원(제35조제1항제3호의 보장성보험 중 우체국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단체보험상품의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험상품별 계약보험금한도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② 제35조제1항제2호의 연금보험(「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해당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만원 이하로 한다.

7.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5호가
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

④ (삭제)

제36조(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① -----

----- 보험종류별

(별표 1-----

- 4천만원(별표 1-----

- 보험종류별 -----

② 별표 1-----

-----.

③ 제35조제1항제2호의 연금보험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불입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개월에 50만원 이하 또는 3개월에 150만원 이하로 한다.

<신설>

③ 별표 1-----

-----.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험금한도액의 인상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협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경제부장관은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인상할 경우 사전에 인상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금융위원회는 제1호의 인상안의 내용을 공표하여 공중의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금융위원회는 제1호의 인상안과 제2호에 의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호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1] < 신설 > 보험의 종류(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2] 는 현행 [별표 1] “보상금지금률의 범위”와 같다

구 분	주계약	특 약
교육보험	- (무)청소년꿈보험 - 우체국학자금보험	<독립특약>
연금보험	- 우체국연금보험 - 플러스연금보험 - 우체국바로받는연금보험 - (무)우체국즉시연금보험	- 사망관련특약 - 장애관련특약 - 입원관련특약 - 수술관련특약 - 진단관련특약 - 골절관련특약 - 통원관련특약 - 의료실비관련특약 - 출산관련특약 - 간병관련특약 - 서비스관련특약 - 전환관련특약
보장성보험	- 하이로정기보험 - (무)우체국하나로OK보험 - (무)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 - (무)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 - 평생보장암보험 - (무)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 에버리치상해보험 - 우체국안전벨트보험 - (무)꿈나무보험 - (무)어깨동무보험 - (무)만원의행복보험 - 휴일재해보장보험 - 우체국단체보장보험 - 우체국누구나OK보험 - 우체국남성건강보험 - 우체국여성건강보험 - 우체국실버보험 - 우체국간병보험 - 우체국교통상해보험 - 우체국직장인보장보험 - 우체국치아보험 - 우체국요양보험 - (무)우체국가족사랑보험 - (무)우체국아이사랑보험	<종속특약> - 입원수술특약 - 3대질병치료특약 - 입원의료비보장특약 - (무)실손의료비특약 - (무)건강클리닉특약 - (무)상해클리닉특약 - (무)3대질병치료특약 - (무)2대질병치료특약 - (무)치치료특약 - 치아치료특약
생사혼합보험	- (무)에버리치복지보험 - (무)파워적립보험 - (무)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 (무)그린보너스저축보험 - 우체국자유저축보험 - 우체국직장인저축보험 - (무)우체국주가지수저축보험 - (무)우체국채권연계저축보험	

주) 보험종류의 수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상품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기획팀	
연 락 처	(02) 2195 - 1618